

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 경과

-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9. 5. 13. 제 천 시 장
- 회 부 일 : 2009. 5. 18.
- 상 정 일 : 2009. 5. 19.(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)

가. 제안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재원조성(조례 제2조)
-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운용·관리(조례 제3조~제4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위원회의 기능, 직무(제5조~제7조)
- 기금의 운용계획(제10조)
- 기금의 결산(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광신)

[법적검토]

-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

-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음.
- 사전절차 이행
 - 입법예고 : 2009. 4. 11 ~ 4. 30(20일간)
 - 조례규칙심의회 : 2009. 5. 8

[행정적검토]

- 본 조례안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, 과태료, 이행강제금,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, 광고물 정비·경관 개선 등 조례가 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
- 안 제2조 (기금의 재원)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,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수수료, 과태료,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
- 안 제3조 (기금의 용도)에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,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에서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/3이상 참여토록 설치 운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.
다만, 제정안 제5조에 있어 위원이 12명으로 구성이 될 경우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총 4명이고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을 1-2명을 위촉할 경우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, 또한 기금전문가가 1/3이상 위촉될 경우 최소 4명으로 광고전문가 및 민간인의 위촉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.

- 우리시는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앞두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 등 그 어느 때 보다 깨끗한 도심환경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,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, 조성 기금의 용도 및 운영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위원회 구성 조항의 민간전문가 위촉범위의 제한 가능성과,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을 기금 용도에 포함시키는 것은?(유영화 위원)
- 본 조례 입법예고시 의견 접수현황과 조례시행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은?(김병창 위원)

나. 답변요지 <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>

- 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 위촉범위가 제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, 기금의 용도에 수거보상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 하겠음.
- 홈페이지 게시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으며,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부작용을 없을 것으로 판단함.

5. 소수의견

“ 없음 ”

6. 토론요지

- 기금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문구 추가

7. 심사내용

- 산업건설위원장 수정안 발의
- 이의유무에 의한 수정안 가결(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)

8. 심사결과

“ 수정안 가결 ”

9. 심사보고 붙임서류

1.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2. 조문대비표 1부. 끝.

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1343
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09. 5. 19.

제 안 자 : 김명섭 위원회 3인

1. 수정이유

본 조례안에 대한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새로운
호를 신설하고자 함.

2. 수정주요골자

안 제3조제1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
같이 신설한다.

3.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또는 물품

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안 제3조제1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또는 물품

수 정 안 대 비 표

조 레 안	수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법 제 6조의2제3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사업 및 목적에 사용한다.</p> <p>1.-2. (생략) <u>(신설)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-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또는 물품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